

특집

우루과이 라운드와 原子力

知的財產權 保護 強化와 原子力



김승수

한국원자력연구소 경영·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

세 세계무역의 확대를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 및 고용 증대를 꾀하기 위해 1948년 1월 1일 발족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GATT)은 주로 관세율의 인하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GATT 체제하의 무역협상은 UR을 포함하여 8차례 걸쳐 행하여졌는데 비관세분야가 처음으로 포함된 것은 1967년 캐네디 라운드였으며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협상노력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1980년대 세계경제의 장기 불황과 미국의 신홍콩업국에 대한 경쟁력 하락은 국가간 통상마찰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신분야 및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GATT 체제하에서 새로운

무역질서(UR)의 확립이 요청되었다.

UR 협상의 기본체제는 무역협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품협상그룹과 서비스협상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상품협상그룹은 14개의 세부협상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UR에서 새로이 추가된 부문으로서 14개의 세부협상그룹 중 신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야는 UR 협상의 4개 주요 쟁점분야로 부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 개방화 시대의 합법적인 무역장벽 수단으로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문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가 GATT 내에서 논의된 이유는 주로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의 주

장에 의한 것으로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이후 미국이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의 전락 등에 대한 원인을 자국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재의 국제협약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매우 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별개 규정 및 제재수단이 새로이 강화된 내용을 강력한 제재수단 및 유통성 있는 협상범위를 갖추고 있는 GATT 체제 안으로 흡수,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조기술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을 포함하는 산업적 발명과 음악, 미술, 문학작품에 관련된 저작과 연출, 공연, 제작 및 방송 등의 문예적 창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하며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인 知的產物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①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②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③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공업의장, ⑥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⑦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⑧ 공업,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파생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재산권이 토지, 건물, 상품 등 有體物에 대한 물적재산권을 의미하는 반면, 지적재산권은 無體財產權으로서 유체물에 體化되어 있는 지적표현 및 지적정보 등을 소유의 대상으로 하고 일반 물적재산권과 같이 讓渡權, 持分權, 支配權을 갖는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지적재산권은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된 유형적인 형태를 갖춘 후에야 권리의 소유할 수 있으며 추상적 아이디어만으로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표 1과 같이 산업체재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yright), 新知的財產權의 3분야로 크게 분류되며, 최근 첨단산업기술의 발달로 특히 신지적재산권의 적용 범위가 확대·심화되는 추세다.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은 특허(patent), 의장(industrial design), 실용신안(utility model), 상표(trademark), 지리적 표시 등에 관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리조약 제1조에 의하면 산업체

표 1. 지적재산권의 분류체계

知 的 財 產 權	生産財產權	特許權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
		意匠權	
		實用新案權	
		商標權	
著 作 權	新知的財產權	地理的表示權	
		著作權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著作隣接權	
		產業著作權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尖端產業財產權	IC회로설계, 생명공학기술
		情報財產權	영업비밀권, 신미디어권, DB권

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 표시, 원산지 명칭,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권리들로서 공업, 상업이외에도 농업, 채취산업분야, 제조 또는 모든 천연산물(포도주, 과물, 담배잎, 과실, 가축, 광물, 광수, 꽃, 곡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중 특허는 대표적인 산업체재권으로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20년 전후)동안 허용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실시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신물질의 발명에 주어지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 새로운 제조기술에 관한 제법특허(process patent),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한 용도특허(use patent)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물질특허의 경우는 물질자체가 권리의 객체이기 때문에 물질특허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동일물질에 대한 제법특허의 사용이나 실시가 불가능한데 이러한 포괄적

보호조치가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저작권은 문예, 학술, 미술 등 사상, 감정에 대한 창작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저작권과 著作隣接權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로 저작권은 저작물 자체 및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등과 관련된 저작재산권과, 저작물의 공표, 저작표시 및 저작자의 명예와 관련된 저작인격권으로 분류된다. 둘째로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이용과 배포(녹음, 녹화, 방송, 재방송, 위성방송 등)에 관련된 권리로서 통신산업, 영상기술부문의 급격한 발전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장 일로에 있는 부문이다.

신지적재산권은 정보산업과 첨단기술의 발달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분야로서 산업체저작권(industrial copyright),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에서 산업체저작권은 산업체재권과 저작권의

성격이 복합된 것으로서 다양화되고 있으며, 정보재산권은 상품의 제조, 판매, 영업, 기획 등의 분야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정보와 이의 전달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데 이중에서 영업비밀권(trade secret)은 기술적 비밀(technical know-how)사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기존체제의 문제점과 추진 경위

현재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활동은 주로 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파리협약(산업재산권 분야 중심), 베른협약(저작권 분야)을 주축으로 각국 관련 법규들이 국제적 조화를 추구하여 왔다. 이외에도 로마협약, 특허협력조약(PCT), 세계저작권협약(UCC), 제네바협약 등 기존의 많은 다자간 협약들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적재산권 문제가 UR의 의제로 등장한 것은 기존 국제협약상의 보호조치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혼란의 미비점들이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강력한 주장에 따른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1986년 9월 UR 협상에서 “위조상품 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적재산

권 협상그룹”(TRIPs 협상그룹: Negotiation Group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에 포함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적재산권 협상이 추진된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8년 동경라운드에서 미국이 GATT 내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여 이의 검토를 위해 1981년 9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WIPO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반대에 의해 협상이 결렬되었다.

둘째, 1983년 11월 총회에서는 GATT 체제내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검토를 결정하였고 1985년 11월 동 검토 의견을 채택하였다.

셋째, 1986년 9월 UR 각료선언문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협상그룹의 명칭은 “위조상품 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상그룹”는 것이었다. 송건민 박사는 대만계 미국 과학자로서 GE社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며 일진과는 1989년 기술자문 계약을 맺은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고받았던 1989년 9월 당시에는 영업비밀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일진은 크게 당황하였다.

여기에서, 우선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비밀이

라는 개념은 특허등록을 하지 않고 금고에 넣어 둔채 혼자만 사용하는 정보와 기술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미국기업의 주장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서 현재는 문서뿐만 아니라 노하우까지 보호하자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다. 영업비밀권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어느 것이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고 어디까지가 영업비밀의 영역에 속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모호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에서도 12개 주만이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제도(출원주의)와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어서 한국의 특허 관행에 익숙한 일진은 등록시점보다 기술개발시점을 중시하는 미국의 관행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일진은 KAIST의 은광용 박사를 주축으로 한 공동연구에 힘입어 1986년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합성에 성공하였다. 본격적으로 생산을 추진하고 상업화를 계획할 때인 1989년 대만계 미국인 송건민 박사를 다이아몬드 합성과정의 기술자문으로 계약, 활용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즉, 계약 이행과정에서 송건민 박사가 건네준 다이아몬드 합성에 관한 문서가 GE社의 기술을 빼낸 것으로 판명된 것인데 일진측은 계약체결 당시 이것이 GE社의 영

업비밀이 아니고 송전민 박사가 연구개발한 것이라는 송박사의 주장을 믿음으로써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도 최종단계의 오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결국, 1993년 7월 30일 보스톤에서의 1심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패소한 이유중에는 배심원들이 요구한 “일진의 다이아몬드 합성日誌”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진의 기술자가 법정에서 답변할 때 언어장벽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구개발 수행시 연구과정의 日誌를 남기지 않는 우리의 습관을 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재판이 있기까지 GE社는 미국 정부의 고위층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압력을 넣어 왔으며 한국시장에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低價功勢를 취해 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7월 30일 “일진이 GE의 영업비밀을 고의로 취득했다”는 판결을 근거로 하여 1994년 1월 4일 내려진 판결요지는 “첫째, 일진은 GE의 영업비밀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와 장비를 파기하거나 GE에 반환하여야 한다. 둘째, 일진은 GE의 영업비밀을 참고로 하여 제작한 금형(서울대 교수팀이 개발함)과 그 설계도 등을 GE에 반환하여야 한다. 셋째, 일진은 향후 7년간 일체의 절삭용 다이아

몬드를 개발해서는 안되며 제 3자의 개발을 지원해서도 안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일진에게 일방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일진과 GE의 분쟁에서 국제화의 실체 및 대응책들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첫째로, 일진이 기술 국산화는 모범적이었으나 국제화를 향한 전략은 미비하여 외국문화와 언어를 숙지함으로써 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GE社의 소송시, 재판을 영업비밀 침해법이 제정되어 있는 보스톤에서 하자는 제안을 저지하여 재판장소를 제 3의 곳으로 변경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측에서의 협조 및 대응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주로 선진국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발명과 창작활동의 장려, 국제교역의 확대, 선진국기술의 이전촉진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우려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부정적 측면은 royalty의 상승, 독점적 소유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증대,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 노력 저해, 기술이전의

둔화, 선진국 통상압력에의 노출 등을 들 수 있다.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제도 실시에 따른 영향으로는 ① 핵심첨단기술(전자통신, 자동차, 컴퓨터)의 이전 어려움, ② 성숙기술 및 핵심기술 이외의 주변기술 이전 활성화, ③ 기술관련 사용료의 인상, ④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간 분쟁의 가속화, ⑤ 자체 기술개발의 필요성 제고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국제적 환경에 맞추어 나가면서 신규立法의 실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 수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역정책 관련 제도를 검토해야 하며, ③ 국내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법규의 숙지를 통해 경쟁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인데, 이는 공동 기술개발 및 특허 공유가 가능한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 혹은 페이턴트 풀링(patent pooling)의 확대를 통합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기술개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의욕의 고취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價値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 이 뒤따라 주어야만 할 것이다.